「중화인민공화국 근로계약법」

[법률, 2012.12.28., 개정]

□ 개요

「중화인민공화국 근로계약법」은 2007년 6월 29일 제10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8차 회의에서 제정을 결의하였고, 2012년 12월 28일 제11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30차 회의에서 개정하였다. 개정 후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중화인민공화국 근로계약법」은 중국의 노동계약제도를 완비하고 노동계약의 노사 쌍방 당사자의 합법적인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며 노동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조화롭고 안정적인 노사관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으며 총 8장 98조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 총칙

노동계약제도를 완비하고 노동계약 쌍방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며 노동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조화롭고 안정된 노동관계를 구성하고 발전시키기 위하여 이 법을 제정한다. 중화인민공화국 국경 내의 기업, 개별 경제조직, 민영의 비기업사업장 등 조직과 노동자 간에 노동관계를 설정하고 노동계약을 체결, 이행, 변경, 해제

또는 중지하는 경우 모두 이 법을 적용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의 노동행정부서는 노동조합과 기업 대표와 회동하여 건전하고 조화로운 3자체제를 구축하고 공동으로 노동과 관련된 중요한 문제를 연구하고 해결하여야 한다.

제2장 노동계약의 체결

고용사업장은 고용을 시작한 날로부터 노동자와 노동관계를 구성하며 고용사업장은 노동자에게 진실되게 노동자의 작업 내용, 작업 여건, 작업 장소, 직업상의 위험, 안전생산 현황, 노동 보수 및 노동자의 이해가 필요한 그 밖의 정황을 설명하여야 하며 노동관계는 서면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노동계약은 고정기간 노동계약과 무고정기간 노동계약, 일정한 업무의 완성을 기한으로 하는 노동계약으로 분류된다.

제3장 노동계약의 이행과 변경

고용사업장은 노동계약의 약정과 국가의 규정에 따라 노동자에게 적시에 충분한 보동보수를 지급해야 하며 지급을 연기하거나 지체한 경우 노동자는 현지의 인민법원에 지급령을 신청할 수 있고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지급령을 발송하여야 한다. 고용사업장이 명칭, 법정대표인, 주요 책임자 또는 투자자 등의 사항을 변경함은 노동계약의 이행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4장 노동계약의 해지와 중지

고용사업장과 노동자는 협상하여 노동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노동자는 서면으로 30일 이전에 고용사업장에 제출하여 노동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이 법에서 규정하는 정황이 있는 경우 고용사업장은 노동계약을 해지하거나 30일 이전에 서면으로 노동자 본인에게 통지하거나 한달치의 임금을 지급한 후 노동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5장 특별 규정

고용사업장과 기업의 직원은 이 법의 규정에 따라 단체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현급 이하의 지역에서 건축업, 광산업, 요식서비스업 등에 종사하는 노동자는 노동조합과 기업대표 간에 산업성 단체계약을 체결하거나 지역성 단체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노동자 파견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이 법이 규정하는 조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노동자의 파견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고용사업장으로 분류되어 노동자에 대한 의무를 마땅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6장 감독조사

국무원 노동행정부서는 전국의 노동계약제도 실시에 대한 감독관리를 담당하며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의 노동행정부서는 당 행정구역 내의 노동계약제도의 실시에 대한 감독관리를 담당하고 현급 이상 각급 인민정부의 노동행정부서는 노동계약제도의 실시에 대한 감독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마땅히 노동조합, 기업측 대표 및 유관행정주무부서의 의견을 참작하여야 한다.

원문	번역문
第一章 总则	제1장 총칙
第二章 劳动合同的订立	제2장 노동계약의 체결
第三章 劳动合同的履行和变更	제3장 노동계약의 이행과 변경
第四章 劳动合同的解除和终止	제4장 노동계약의 해지와 중지
第五章 特别规定	제5장 특별 규정
第一节 集体合同	제1절 단체계약
第二节 劳务派遣	제2절 노동파견
第三节 非全日制用工	제3절 시간제 고용
第六章 监督检查	제6장 감독 조사
第七章 法律责任	제7장 법적 책임
第八章 附则	제8장 부칙